

지식출판콘텐츠원 출판위원회 운영세칙

제정 2020.12.1.

제1조(출판위원회)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지식출판콘텐츠원 산하에 출판위원회를 둔다.

제2조 (구성) ① 출판위원회는 서울·글로벌부총장, 서울·글로벌교무처장, 기획조정처장, 연구산학협력단장, 사업지원처장, 지식출판콘텐츠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총장이 위촉하는 학문영역별 교수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부총장으로 하고, 간사는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팀장이 된다.

③ 출판위원회에는 출판물의 기획 및 선정 등 출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기획위원회를 두며, 그 운영에 관하여는 출판기획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3조 (임기)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일반직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회의소집 및 의결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 (심의사항) 출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식출판콘텐츠원 운영의 기본 방침 및 사업계획
2. 출판물의 기획 및 선정
3. 지식출판콘텐츠의 예산 및 결산
4. 지식출판콘텐츠 규정의 개폐
5. 기타 지식출판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